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514316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배승열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8.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영업에 관하여 2019. 12.경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99,89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11. 2. 일식당 운영을 계획하던 소외 C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4,290,000원, 공사기간을 2018. 10. 24.부터 2018. 11. 15.까지로 하는 실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0.경 위 실내 건축공사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일식당을 운영(별지 목록 기재 영업,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다.

다. C은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99,89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9. 12. 31.경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무상으로 양도(이하 위 영업양도를 위한 C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폐업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일인 2019. 12. 31.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2) C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영업을 처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C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원고 등 C에 대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스스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선의를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할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과 부부관계인 점, 피고 스스로 '피고는 C의 기존 사업실패로 인하여 대출 등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C과 사이에 둔 삼남매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사 G의 이 사건 점포에서의 외상식사대금 465,000원 및 C이 대납한 G에 대한 벌금 2,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인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서 G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위 외상식대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1)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79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한 후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C이 다시 이 사건 점포 영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존재하던 기존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인 C에게 회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점포에 투입된 인테리어공사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이 적어도 99,89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 4)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99,89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9,89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 [별지목록]

1.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호

2. 상 호

끝.

